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외 9건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근로” 를 “노동” 으로 용어 변경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390호,
제2206392호, 제2206393호, 제2206394호,
제2206395호, 제2206396호, 제2206397호,
제2206398호, 제2206400호, 제2206405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 변경	3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11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음.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근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그 이면에는 국가의 노동 통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임.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임.

이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 변경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각 개정안은 제명 및 조문 중 “근로”로 사용된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임(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② 근로기준법,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④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⑦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⑧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⑨ 근로복지기본법, 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근로”와 “노동”의 사전적 의미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勤勞)”는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하고,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뜻함.

한편, “노동(勞動)”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 또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의미하고,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하여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

람”을 뜻함.

근로	- 부지런히 일함
근로자	-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
노동	- 몸을 움직여 일을 함, -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노동자	-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 육체노동을 하여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용어 사용 현황 및 용어 변경에
관한 논의 내역

1) 헌법 및 법률에서의 용어 사용 및 정부부처 또는 소속기관 의 명칭 사용

대한민국헌법의 경우 제32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제1항도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한편, 법률에서는 근로와 노동을 각 법률별로 혼용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노동자도 혼용하고 있음.

정부 부처 또는 소속기관의 명칭 사용례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와 같이 정부 부처 또는 소속기관의 명칭으로 노동을 사용하고 있음.

[표] 법률상 “근로(자)” 또는 “노동(자)” 용어 사용례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6조(사업) 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2.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청소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2) “근로(자)”에서 “노동(자)”으로의 용어 변경에 관한 논의 내역

“근로(자)”에서 “노동(자)”으로의 용어 변경에 관하여, 제20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개정안이 14건 발의된 바 있는데, 현행 헌법이 ‘근로’ 및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가 임기만으로 폐기된 바 있음.¹⁾

한편, 제20대국회에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헌법에서 사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8709호) 등 참고

용되고 있는 용어인 “근로(자)”를 “노동(자)”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적 있는데, 법률에서 노동과 근로가 혼용되고 있으므로 법체계상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과거 이념 대립에 따라 근로 및 노동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문제되었으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의견과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이라는 용어와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할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대립하였음.²⁾

그 후 2018년 3월 대통령이 제안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³⁾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및 군사독재 시대에 사용되어 온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동 개정안은 제20대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표] 2018년 대통령이 제안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일부

- | |
|--|
| <p>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p> <p>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p> <p>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u>노동</u>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④ <u>노동조건</u>은 <u>노동자</u>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p> <p>⑤ 모든 국민은 고용·임금 및 그 밖의 <u>노동조건</u>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u>노동</u>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p> <p>⑥ 연소자(年少者)의 <u>노동</u>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p> <p>⑦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 법률</p> |
|--|

2) 제20대국회 제354회 제19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2017년 11월 23일) 회의록 14쪽 이하 참조

3) 대한민국헌법 개정안(대통령). 의안번호 제2012670호.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4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대국회에서도 법률의 제명을 「근로기준법」에서 「노동기준법」으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으나⁴⁾,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라. 검토의견

개정안은 부지런히 일한다는 통제적 의미의 “근로”라는 용어를 물자 생산을 위한 노력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의 “노동”으로 변경하여 노동의 주체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과 법률상 용어를 통일하여 일관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대한민국헌법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법률에서도 “근로”와 “노동”을 유사한 의미로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 개정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4)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9757호) 등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법률 용어의 보편성·가치중립성을 확보하고 법령상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헌법에서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한 후 70여년간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현장 안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률 용어를 변경할 경우 상당한 현장 혼란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